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소:우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1 3층/전화:02)3271-0523/fax:02)3271-0535/ 담당자:이동규

문서번호 : 세가업무 가정 20-22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 천일국 8년 천력 6월 14일 (양력 2020년 8월 3일)	접	일자 시간		결재	국장
수신 : 지구장, 교구장, 교회장	수	번호		·	
경유 :	처리과			공	
참조 : 총괄국장, 지구 및 교구 가정부장	담당자			람	

제목 :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 행정 시행 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가정연합 공문 세가본 제230호(전도-26)에 따라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를 종족축복 및 축복헌금 분야의 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위 약정 확인서를 발급받는 행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각 교회 현장에서는 참조하여 천보심사 기간 안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 행정 개요

1) 신청기간 : 천일국 8년 천력 6월 14일(양 08.03) 오후 7시부터

천일국 8년 천력 6월 17일(양 08.06) 정오까지 접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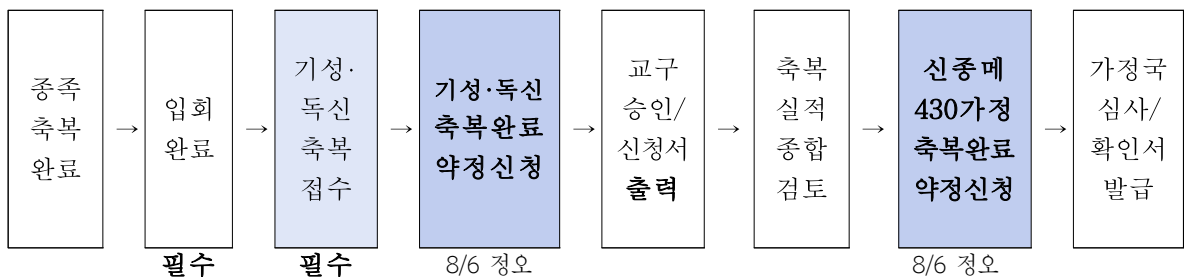
2) 신청대상

가) 한국에서 종족축복을 완료하였으나 심사 신청일(8월 6일)까지 축복헌금 봉헌이 어려운 경우, 2021년 기원절까지 축복헌금을 봉헌할 것을 약정하는 가정

나) 행정지원센터 하나로에 ‘기성·독신 축복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축복감사헌금을 납부하지 않은 믿음의 자녀(2대) 명단이 있는 경우
(※ 기성·독신 축복신청서는 입회원서 행정이 완료되어야 가능함)

다) 해외에서 종족축복을 완료한 가정은 세가본 제235호(전도-29) 참조

3) 신청 및 심사절차



가) 기성·독신 축복완료 약정신청 : 하나로(<http://hanaro.ffwp.or.kr>) 진행

나)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 : 가정국 이메일 접수

4) 축복실적 인정기준

- 가) '천보심사 종족축복 확인 양식'을 통해 산출한 축복가정 수
(※ 세가업무 전도 20-15 공문 첨부파일 참조)
- 나) '기성·독신 축복완료 약정신청'을 통해 신청한 축복현금 약정 가정 수
- 다) 1997년 160가정 실적 확인 근거 자료 (160가정 확인증 등)
- 라) 상기 가), 나), 다) 항목의 실적 합이 430가정이 넘으면 인정됨

나.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기성·독신 축복완료 약정신청' 행정 세부 안내

1) 신청방법(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메뉴얼 참조)

- 가) 하나로 좌측 상단 민원신청→'기성·독신 축복완료 약정신청' 클릭
- 나) 식구검색→신종족메시아 가정(믿음의부모) 검색 후 불러오기
- 다) 믿음의자녀 검색 클릭 후 명단이 신청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대기
- 라) 믿음의자녀(2대) 명단 中 약정하고자 하는 가정만 체크→'신청'클릭
- 마) 소속 교구에서 승인하면 결재완료 (관리p-결재할 민원)
- 바) 하나로 나의민원→'기성·독신 축복완료 약정신청' 클릭→인쇄하기 클릭
- 사)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 신청 근거로 첨부

2) 주의사항

- 가) 하나로에 기성·독신축복 신청서가 접수된 믿음의자녀만 화면에 나타남
- 나) 약정신청은 믿음의자녀(2대)만 가능. 믿음의손자(3대) 인정 불가함.

다.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 신청 세부 안내

1) 신청방법

- 가) 신청 전 반드시 '축복실적 인정기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나)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신청서' 작성
- 다) '심사 근거 자료(하단 안내)'를 반드시 첨부하여 상신 진행
- 라) 교회→교구→지구→가정국 순으로 절차를 거쳐서 접수 요망
(※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신청서류는 반려 처리함)

2) 심사 근거 자료

- 가)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신청서 (※ 첨부1 양식)
- 나) 축복실적 근거 자료
 - (1) '천보심사 종족축복 확인' 자료
 - (2) 하나로에서 완료된 '기성·독신 축복완료 약정신청' 출력자료
 - (3) 1997년 160가정 실적 확인 근거 자료 (160가정 확인증 등)

3) 발급양식 : 가정국 심사 후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 발급

4) 수령방법 : 확인서는 지구 이메일을 통해 발송 예정

라. 천보 입적을 위한 추후 행정 보강 안내

- 1)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확인서' 행정은 제1차 천보입적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시적 행정입니다.
- 2) 위 약정확인서를 통해 천보 입적을 신청한 가정은 2021년 기원절 전(추후 공문 안내)까지 기존 프로세스인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확

인서' 행정을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3)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천보 입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

1) 가정국 담당자 : 이동규 계장 (Tel. 02-3271-0523)

첨부1 :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약정 신청서

2 : 기성·독신 축복완료 약정신청 하나로 행정 이용 매뉴얼 “끝”

가 정 국 장 홍 성

